

4.1.27 시설물금연규정

제정 2002. 01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금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과 교직원 및 학생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연을 위한 조치) 본 대학은 시설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금연 및 규정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한다.

제3조(시행대상)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생·교직원 및 외부 방문객 모두를 포함한다.

제4조(사용범위) 본 대학 시설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‘공중이 이용하는 시설(법무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6항)’로서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한다.

- ① 금연구역: 흡연구역을 제외한 시설물 내 전 구역(강의실, 생활관, 복도, 계단, 화장실, 동아리방, 식당, 일반 휴게실 등 포함)
- ② 흡연구역: 학교에서 특별히 지정된 장소 또는 옥외 장소

제5조(준수사항) 본 대학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금연구역에서는 흡연금지
- ② 지도위원(본 대학 전 교직원)의 지시 이행
- ③ 기타 본 대학에서 지시하는 사항

제6조(제재사항) 제4조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다.

- ①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학사상의 불이익 및 경고조치를 받음
- ② 금연구역 내 흡연 발생시 해당학과 및 부서 운영비 삭감
- ③ 금연구역 내 흡연자 방조시 지도위원 경고조치

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